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 입소계약 (이하 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” 포함)

① 입소계약서 작성은 시설급여요양서비스 개시 전이나 당일에 수급자(보호자)와 시설이 체결한다.

② 입소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(※입소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.)

제2조 (계약목적)

입소계약서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명기하여 계약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수급자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,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계약기간)

①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.

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③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인정등급, 장기요양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에도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.

④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, 수급자(보호자)에게 변경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 (계약의 해제)

① 수급자(보호자)의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

②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
③ 타 수급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
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⑤ 수급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상태가 의료시설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
⑥ 수급자의 이용료 4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자주 연체하여, 시설과 수급자(보호자)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될 때

⑦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5조 (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)

① 월 이용료 매년 고시된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
※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.

② 본인부담금 매년 고시된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르며, 그 비용은 전액 수급자(보호자) 부담한다.

③ 비급여 비용은 전액 수급자(보호자)가 부담한다.

- (식재료비) **1식 2,800 * 3식 *30일 = 252,000(간식비 포함)**

(개정2024.01.01) 기존 1식 2,300원에서 2,800원으로 개정됨.

(※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의 경우 식재료비 정부보조의 생계비로 부담할 수 있다.)

④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시설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
제6조 (이용료의 납부방법)

① 수급자 이용료는 매월 10~15일 사이 수급자(보호자)에게 발송하는 우편물,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.

② 수급자(보호자)는 통지된 이용료를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

원칙으로 하며, 통지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급자(보호자)의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.

계좌번호 : [농협] 351-0798-5931-33, 경산효자손요양원

제7조 (신원인수인/보호자의 권리)

① 시설급여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
③ 수급자의 건강, 식사 등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
④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설명 듣고 알 권리
⑤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⑥ 신원인수인은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

제8조 (신원인수인/보호자의 의무)

①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병력상태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,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할 의무
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의무
③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,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설에 통보 의무
⑤ 수급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정산 등의 의무